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0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 : 송언석 • 구자근 • 김정재

김영식 · 김석기 · 권명호

태영호・강기윤・윤두현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 설비투자가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고 2020년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5%가 감소하는 등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에 실시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일몰기한이 만료된이후로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3(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
	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
	<u>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u>
	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
	<u>제한다.</u>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u>야 한다.</u>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
	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